

#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

▶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64호(2014. 9. 5)

## 1. 개정 이유

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축산물의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제조·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입법 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-222호, '14. 8. 8)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중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하여 영업자의 과도한 영업비용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원재료, 성분배합비율,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가 품목제조 보고를 달리한 경우 하나의 **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**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4조제1항)

- 1) 동일한 제품이라도 영업자가 제품명이나 납품처 등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 기준으로 품목별 검사를 각각 실시함에 따라 검사기준 완화 필요
- 2) 제품의 원재료, 성분배합비율, 생산공정 등

이 동일함에도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, 하나의 대표 품목을 검사함으로써 품목별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정함

3)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검사 의무 부담을 완화

나. '식육가공품'의 경우 [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]에 따라 **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유형별로 검사**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

- 1)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는 가공품을 지정
- 2)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 가능한 가공품으로 식육가공품을 지정
- 3) 식육가공품에 대한 영업자의 검사 부담 완화

## 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- 라. 기 타 : (1) 행정예고(공고 제2014-270호, '14. 9. 2.~'14. 9. 4.)
- (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대상 없음 ('14. 9. 5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- 164호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

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「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-164호, 2014. 9. 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9월 5일  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

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4조**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①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. 다만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및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, 이 중 하나의 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.

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제유류는 품목별로 매월 1회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생산단위별로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.
- ③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.

### 부 칙(2014. 9. 5.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자가품질 검사기준에 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후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